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매출정산 합의 특약사항

1. 매출정산	가. 매출정산기준 (아래 기준표에 의함)	① 임금으로서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당연히 없음을 재확인 한다.		
		② 세전매출액에 대해 아래 정산기준표의 정산을 적용하여 개인별 정산금액을 계산한다.		
		③ 위 정산금액에서 부가세, 사업소득세원천징수분, 임차료, 장비사용료, 공과금, 재료비 등을 공제한 후 최종 수수료를 결정한다. 다만, '乙'이 미용시술을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과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부가세, 카드수수료, 약품재료비, 사업소득세 제외)의 비용은 계산의 편의상 '甲'이 포괄하여 정산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선불권 잔액 처리방법	디자이너의 업무위탁계약 해지로 인한 이직시 디자이너가 판매한 선불권의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안으로 시행하기로 하며, 하기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지정 디자이너의 경우에도 디자이너가 후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후지급으로 반영한다.)		
	①	* 선불권 매출에 대해 고객이 시술을 받아 [차감된 금액만] 매월매출에 반영해 주기를 원한다. * 이 경우 선불권 잔액의 최종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 [지정 디자이너]	* 선불권 매출이 발생한 달의 매출에 모두 반영하여 일시금으로 먼저 지급해 주기를 원한다. (지정 디자이너의 경우에도 디자이너 본인이 후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후지급으로 반영한다.) * 이 경우 선불권 잔액의 최종 관리 및 책임은 판매한 디자이너가 부담한다. * 따라서 계약해지 시 선불권 잔액이 있을 경우 지급받은 인센티브 해당 정산율로 산정하여 반환하기로 하며, 회사는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되, 부족분이 있을 경우 디자이너는 마지막 수수료 정산일까지 회사로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다. 매출정산기준표 (단위:만원)	개인매출액 (구간 별)	정산율	비 고

※ 여기에 없는 매출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공제항목	부가세	10.0%	카드수수료	5.25%~2%	※ 여기에 없는 공제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공제할 수 있음.
	임대료	10.2%	장비사용료	5.5%	
	공과금	5.0%	약품재료비	7.0%	
	사업소득세	3.3%	인건비	54.0%	

3. 적용기준	디자이너	매출에 의한 ALL PERCENT 적용
---------	------	-----------------------

4. 협력사항	본 특약의 당사자들은 영업프로모션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본인이 자립으로 인턴을 언제든 고용 할 수 있으며 , 매장에서 지원하는 메인 인턴의 기준은 부가세 제외 매출 1100만원 이상 일시 사용 가능하다.		
	본 특약의 당사자들은 매출증대, 교육, 패션, 헤어트렌드 자료 및 정보수집, 제품관련지식 등 수집에 최선을 다한다.		

본 특약사항을 체결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므로 본 내용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아니하겠습니다			
甲(상호)	휴에이지 헤어	乙(프리랜서)	(서명)